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단514271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주식회사 세움

변론 종결2015. 10. 8.

판결 선고2015. 10. 22.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91,053,828원과 그 중 90,373,467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6. 2.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와 피고 주식회사 세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세움은 피고 A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4. 7. 25. 접수 제233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는 원고에게 91,053,828원과 그 중 90,373,467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5. 9.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로 전부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이상원

별지